

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재단의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 (안 제1조 ~ 제2조)
-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 (안 제4조 ~ 제5조)
-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임원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8조)
-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에 대한 사항 (안 제14조 ~ 제15조)
- 공유재산 무상사용 (안 제16조)
- 공무원의 파견 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- 합 의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면 2022년 11월 문화재단 설립 기본 계획 수립, 2023년 4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구미시 문화여건 및 문화예술생태계를 반영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문화재단 전략과제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현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음.

- 따라서,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운영체제를 통해 크고 작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활동이 기대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단이 현 문화사업의 단순 이관 집행 기능이 아니라, 지역 문화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문화진흥에 중점을 둔 구미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
- 또한, 문화재단설립 출연금 조성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 구미시 문화예술 활동 유관기관들과의 업무 구분, 정책적 협력 구조 마련,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함.